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8호 2019. 10. 10.(목)

공 고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19-141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지침

3.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신설(안 제19조)

- ①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9.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30(수)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76), 직접방문 등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061-270-3352, FAX 270-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2호에 “만”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②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항에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③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

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④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관람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관람료)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⑥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⑦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개정 2006.1.16, 2008.3.31, 2010.10.4, 2011.12.26, 2016.12.19., 2018.12.17.>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유 달 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목포살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강습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	1인당	2,000	1,000	1,000	1,000	500	500	36홀 사용료	
목포시 궁도장	2시간 기준	2,000	1,000	1,000	1,000	500	5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u> ①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제19조 (생 략)</u>	<u>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u>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